

『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 · 관리를 위하여 입장거절 및 사용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
-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추가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, 체육 · 여가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입장거절 및 사용정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9조의2, 제9조의3)
- 법령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
-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(안 별표4)
 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,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가정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- 수영장 월 회원 중 만 10세부터 만 55세까지의 여성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입장거절 및 사용정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올림피아기념국민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도모하고,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체육·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입장거절 및 사용정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설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
-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한편, 인구감소 대응 시책으로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,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영장 월 회원 중 사용료 10% 감면 대상을 기존 만 13세부터 55세까지 여성에서만 10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됨.
-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, 여러 사회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